

1. 개정이유

- 가.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활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, 활동상황의 기록관리는 구조활동기록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,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기록관리를 명확히 구분 필요
- 나. 구조·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계 법령 서식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(안 제8조의5)
- 나. 생활안전활동 기록지 신설(안 별지 제3호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지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5(생활안전활동상황의 기록관리) ①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생활안전활동기록지에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기록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.

② 소방본부장은 생활안전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방서		119구조대(안전센터)		생 활 안 전 활 동 기 록 지				결재		센터장(구조대장)	
전화)		-								센터장(구조대장)	
재난번호		-		일련번호		-					
생활 안전 출동	신고 일시	:		신고자	전화번호			신고방법	[]일반전화 []휴대전화 []자체접수 []기타()		
	출동 시각	:		사고주소			좌표	위도 N / 경도 E			
	현장 도착	:		사고장소	■ 주거시설 ([]공동주택 []단독주택 []주상복합 []오피스텔 []다세대주택 []가옥사 []기타주거시설) ■ 상업시설 ([]판매시설 []근린생활시설 []위탁시설 []자동차관련시설 []관광휴게시설 []장례및묘지관련시설 []기타) ■ 산업시설 ([]공장 []창고 []작업장 []공사장 []발전시설 []자원순환관련시설 []하수 등 처리시설 []고물상 []기타) ■ 교육연구시설 ([]학교 []유치원 []학원 [] 연구시설 []기타 교육시설) ■ 노유자시설 ([]아동관련시설 []노인복지시설 []장애인시설 []어린이집 []기타 노유자시설) ■ 교통운수시설 ([]고속도로 []일반도로 []철도 []지하철 []항공시설 []항만시설 []역사터미널 []기타) ■ 임야하천 ([]산 []들 []논밭 []강 []댐 []하천 []호수 []저수지 []바다 []기타) ■ 기타 []숙박시설 []업무시설 []방송통신시설 []종교시설 []의료시설 []문화 및 집회시설 []문화재 []동식물관련시설 []운동시설 []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[]교정·군사시설 []지하구 []기타						
	거리	m	k								
	신고자 접촉 시간	:									
	활동 완료	:									
	귀소 시각	:									
기상상황	날씨	[]맑음 [] 흐림 []비 []눈 []우박		기온	℃		강수량	mm			
	특보	[]주의보 []경보 []강풍 []호우 []대설 []건조 []한파 []태풍 []황사 []폭염 []폭랑 []해일									
활 동 유 형	출동유형		[]정상 []현장 도착 후 미처리 []현장 도착 전 귀소 []지원출동 []관할 []관할외								
	벌(집)제거		■ 풀벌 ([]풀벌 []기타) ■ 말벌 ([]장수말벌 []쌍살벌 []땅벌 []기타) ■ 외래말벌 ([]등검은말벌 []기타) ■ 기타 벌(집)제거 ([]기타)								
	동물출몰 및 처리		■ 포획 ([]포유류 []조류 []파충류 []양서류 []곤충/거미 []기타야생동물 []기타) ■ 사체처리 ([]포유류 []조류 []파충류 []양서류 []곤충/거미 []기타야생동물 []기타)								
	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		[]고도를 []낙하물 []간판 []나무(가로수) []건설현장 등 울타리(펜스) []건물내구조물 []잔해물 []시설물안전조치 []기타 장애물								
	잠금장치개방		[]문잠김 []차량문잠김 []기타 잠금장치잠김 []기타								
	비화재보 확인		■ 소방시설 ([]단독형감지기 []비상경보설비 []시각경보기 []자동화재탐지설비 []비상방송설비 []자동화재속보설비 []통합감시시설 []누전경보기 []가스누설경보기 []화재알림설비 []기타) ■ 비상발전기 ([]비상발전기 가동 관련) ■ 기타 ([]기타)								
	피해복구 지원		■ 전기 ([]전원차단 []전원공급지원) ■ 생활지원 ([]급수지원 []배수지원) ■ 기타 피해복구 지원 ([]기타)								
	생활끼임		■ 장신구 ([]반지 []목걸이 []기타 장신구) ■ 장남감 ([]장난감 []기타) ■ 도구, 장치 ([]도구, 장비 []기타) ■ 기타 생활끼임 ([]기타)								
	행사지원		■ 순찰활동 ([]공연장 []행사장 []집회 []업무지원 []기타) ■ 근접배치 ([]공연장 []행사장 []집회 []업무지원 []기타)								
감염병 지원 활동		■ 방역지원 ([]가축 []사람 []기타 방역지원 []기타) ■ 용수지원 ([]조류독감 []아프리카돼지열병 []구제역 []기타 전염병 []기타)									
기타 생활안전활동		[]도로 진입통제 []하천 진입통제 []차량안전조치 []기타)									
활동 개요		특이사항									
활동 실적 (복수 선택 가능)	처리	[]벌(집)제거 []동물포획/처리 []장애물처리 []잠금장치개방 []실종자발견 []비화재보처리 []피해복구지원 []끼임제거 []행사지원 []감염병 지원 활동 []기타 생활안전 처리									
	지원활동	[]안전조치 []기타 활동									
	미처리	[]자체처리 []타 기관 처리 []구조거절 []구조거부 []오인신고 []거짓신고 []상습악의									
관계인원	■ 계: 명		[]구급대인계: 명		[]현장조치: 명		[]외상없음: 명		[]기타: 명		
인적 사항	성명	성별	나이	연락처	직업	주소		구조상태			
								[]사망 []부상 []외상없음 []기타			
동원 인력	■ 소방 ([]구조대원: 명 []생활안전대원: 명 []119안전센터대원: 명) []의용소방대원: 명 []기타: 명										
동원 장비 (복수 선택 가능)	■ 차량 ([]생활안전차 []펌프차 []구조버스 []구조공작차 []헬기 []선박 []트레일러 []기타()) ■ 생활안전용 ([]벌집제거장비 []절연봉 []승강기 비상키 []차량문개방기 []동물포획장비 []블로우건 []구조용 공구세트 []전신형 안전벨트) ■ 일반구조용 ([]구조용 사다리 []로프 []자기확보줄 []요구조자 안전벨트) ■ 수난구조용 ([]스킨장비 []구명조끼 []구명부환/튜브) ■ 측정용 ([]가스측정기 []개인선량계 []잔류전류검지기) ■ 절단구조용 ([]동력절단기 []체인톱 []철선절단기) ■ 중량물작업용 ([]유압 엔진세트 []배터리 유압장비세트 []에어백 []리프트 잭) ■ 탐색용 ([]소방드론) ■ 파괴용 ([]도끼 []문개방기구 []드릴) ■ 보호·보조장비 ([]개인보호장비 []화학보호복 []안전매트리스 []공기안전매트 []이동식송배풍기 []열화상카메라) ■ 기타 ()										
장애평가	[]없음 []원거리 출동 []교통정체 []위치 부정확 []차량·장비 미흡 []기타()				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5(생활안전활동상황의 기록관리) ①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생활안전활동기록지에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기록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.</u> <u>② 소방본부장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